

가상 네트워트 집금을통한 통합 매출채권 관리 솔루션 이용약관이 아래와같이 변경됩니다.

시행일 : 2016년 4월 29일

변경전		변경후		비고
	<추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귀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귀종' 추가
제 2 조 서비스 범위	<p>1.가상계좌 개설서비스: 은행은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u>가상계좌</u> 번호를 건 별로 채번하거나 일괄 채번하여 고객과 상호 협의된 HSBC가 제공하는 VAN사의 Web browser를 통해 고객에게 전송한다.</p> <p>3.집금서비스: 은행은 고객에게 부여한 거래은행의 가상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고객의 지정 집금 계좌로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이체 시간에 따라 이체처리한다.</p>	제 2 조 서비스 범위	<p>1.가상계좌 개설서비스: 은행은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u>거래은행의</u> <u>가상계좌</u> 번호를 건 별로 채번하거나 일괄 채번하여 고객과 상호 협의된 HSBC가 제공하는 VAN사의 Web browser를 통해 고객에게 전송한다.</p> <p>3.집금서비스: 은행은 고객에게 부여한 거래은행의 가상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고객의 지정 집금 계좌로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이체 시간에 따라 이체처리한다.</p>	- '거래은행의'추가 - 이체처리시간을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시간으로 구체화
제 4 조 이용기관의 제한	<p>1.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의 이용기관은 기업고객에 한한다.</p> <p>2.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이용기관이 전자 금융업자일 경우, "을"이 제공한 가상계좌를 타 업체에 할당하여 관리를 대행하거나 할 수 없다.</p>	제 4 조 이용기관의 제한	<p>1. 가상네트워크집금을 통한 통합매출채권 관리솔루션 서비스의 이용기관은 기업 고객에 한한다.</p> <p>2. 가상네트워크집금을 통한 통합매출채권 관리솔루션 서비스의 이용기관이 전자금융업자일 경우, "은행"이 제공한 가상계좌를 타 업체에 할당하여 관리를 대행하거나 할 수 없다.</p>	-서비스의 명칭 통일 -'을'-'은행'으로 변경
제5조 업무처리시간	<p>① 가상계좌 업무처리 주기 및 집금 계좌로의 이체 처리 시간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며, 이에 대한 가상계좌 처리 주기 및 이체 처리 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계좌 처리 주기: 일별 / 주별 / 월별 / 월말 • 이체 처리 시간 : 가상계좌 입금 당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1시 사이에서 하루 5번까지 이체 처리 가능하며, 이체 처리일 및 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이체 처리 시간은 거래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행일 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한다.) <p>이체처리일: () 예: 매일, 혹은 매월 25일 이체처리시간: () 예: 매일 오후 5시와 11시</p> <p>② 업무처리 시간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미처리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의 영업시간 중에 처리하기로 한다.</p>	제5조 <u>집금서비스 처리 시간</u>	<p>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집금서비스는 고객과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 <u>매영업일</u> [시, 시, 시, 시, 시, 시]에 이체 처리하기로 한다.</p> <p>② 은행 영업시간외 시간의 집금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미처리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의 영업시간 중에 처리하기로 한다.</p>	-제목변경 -집금서비스 처리 시간을 매영업일로 변경. -업무처리 시간외 문구변경

변경전		변경후		비고
제7조 입금 업무처리	<p>① 은행은 지급인이 거래은행에 개설된 가상계좌로 입금한 자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동 자금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고객의 집금 계좌로 고객과 합의한 시간내에 이체 처리한다.</p> <p>② 은행은 휴일에 거래은행에 개설된 가상계좌로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그 익영업일 모계좌로의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고객의 집금 계좌로 고객과 합의한 시간내에 이체 처리한다.</p> <p>③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어 거래은행에 개설된 은행의 모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표가 추심 완료된 후에 은행의 집금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하다.</p>	제7조 입금업무처리	<p>① 지급인이 거래은행의 가상계좌로 입금한 자금에 대하여 은행은 거래은행으로부터 동 자금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제1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고객의 집금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휴일에 거래은행의 가상계좌로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은행은 그 익영업일에 모계좌로의 입금을 확인한 후, 제5조제1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고객의 집금계좌로 이체 처리한다.</p> <p>② 은행이 고객에게 부여한 거래은행의 가상계좌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경우, 은행은 해당금액을 입금일 당일(입금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 고객의 집금계좌로 입금 처리하기로 한다. 고객은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액을 해당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결제원의 추심절차가 완료된 이후(입금일 다음 영업일 오후 12:30분경 이후) 고객의 집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다. 다만, 추심완료 전에 집금계좌로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은 자기앞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음을 고객에게 통보한 후 해당금액을 집금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여 부도반환 처리하며, 동 처리 결과를 집금계좌 적요란에 표시하기로 한다.</p>	-자기앞수표 입금처리 방법을 익일입금에서 당일입금처리로 변경
제9조 수수료	<p>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고객과 은행간에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고객은 별첨 1의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은행은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 기간 안에 고객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p>	제9조 수수료	<p>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고객과 은행간에 <u>별도로 합의하여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u>, 고객은 별첨 1의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u>별첨 1의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u> 은행은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 기간 안에 고객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p>	-수수료 적용범위 구체화 -수수료 구체화
제12조 계약의효력발 생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u>어느 일방이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u>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효력발생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u>제13조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계약의 해지</u>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해지의사표시방법을 제13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구체화
제13조 서비스의 해지	<p>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4. 가상계좌 발급후, 1년간 가상계좌 사용 내역이 없을 경우, <u>“을”은 “갑”</u>에게 서면 통보후 해지할 수 있다.</p> <p>6. ‘고객’이 <u>제 4 조 2항에</u> 명시한 가상계좌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p>	제13조 서비스의 해지	<p>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4. 가상계좌 발급후, 1년간 가상계좌 사용 내역이 없을 경우</p> <p>6. 고객이 <u>제3조에</u> 명시한 가상계좌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p>	-을과 갑 삭제 -조항번호 변경 반영
제15조 준용사항	<신설>	제15조 준용사항	④ <u>고객이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집금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u> , 은행은 고객에게 가상계좌 이름 등 거래 내역을 <u>분기별로</u>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조항